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사 등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, 인구 50만명 미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내 전문가 부족 등으로 필수전문인력을 규정에 맞게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,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중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, 지역 여건상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수전문인력을 1명으로 완화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
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전문인력을 제5항 각 호의 인원 중 1명으로 할 수 있다.

1.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·군·구
2. 인접한 시·군·구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기 곤란한 경우
3. 지역 여건상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3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현 행과 같음) <u>⑦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</u> <u>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</u> <u>에는 필수전문인력을 제5항 각</u> <u>호의 인원 중 1명으로 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1.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·군</u> <u>· 구</u> <u>2. 인접한 시·군·구와 공동으</u> <u>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</u> <u>를 설치·운영하기 곤란한 경</u> <u>우</u> <u>3. 지역 여건상 필수전문인력을</u> <u>2명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</u> <u>우</u>
<u>⑦ ~ ⑨ (생 략)</u>	<u>⑧ ~ ⑩ (현행 제7항부터 제9</u> <u>항까지와 같음)</u>